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조치〉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27호, 제21228호,
제21229호, 제21230호, 제21235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9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7

I. 개요

1. 제안경위(공통)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9. 9.

(3) 회 부 일 : 2026. 9. 1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통)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현행규정 중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② (생략) ③ <u>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을 조사하는</u>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검사 또는 수사기관--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사를 하는 -----.</u>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라 한다)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u>조사·검증</u>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제59조의8제1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① ----- ----- ----- ----- ----- ----- <u>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u> ----- ----- ----- ----- ----- -----

현행	개정안
금 조사과정, 검증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 -----.
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u>조사·검증</u> 또는 증인 신문 전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 ----- <u>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u> ----- <u>검증</u> ----- -----.
③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u>수사·재판과정</u> 의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u>수사, 공소</u> 및 ----- <u>재판과정</u> ----- -----.
시행일 : 2026년 10월 2일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69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2조(의료사고심의절차 등)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보건의료인이 입건된 경우 시·도경찰청장, <u>지방검찰청 검사장</u> 과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보건의료인 또는 해당 사건의 환자등	법률 제2169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2조(의료사고심의절차 등) ① ----- ----- ----- <u>지방공소청장</u> ----- -----

현행	개정안
은 심의위원회에 해당 의료사고의 의료행위등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 또는 환자등이 심의를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시·도경찰청장 또는 <u>지방검찰청 검사장</u>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심의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도경찰청장 또는 <u>지방검찰청 검사장</u>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거나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u>지방검찰청 검사장</u>에게 제3항에 따른 심의기간 중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거나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시·도경찰청	----- ----- ----- ----- ----- ----- ----- 중(지방공소청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 ----- 지방공소청장-----.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지방공소청장----- -----. ④ ----- ----- ----- 지방공소청장----- ----- -----. ⑤ ----- -----

현행	개정안
장 또는 <u>지방검찰청 검사장</u>은 해당 사건의 의료행위등의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감정서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⑥·⑦ (생략) 제53조(자료의 요청) ① 심의위원장은 조정중재원,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시·도경찰청장 또는 <u>지방검찰청 검사장</u> 등 관계 기관에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 <u>지방공소청장</u>----- ----- ----- ----- ----- ----- ⑥·⑦ (현행과 같음) 제53조(자료의 요청) ① ----- ----- ----- ----- ----- <u>지방공소청장</u>----- ----- ----- ----- ② (현행과 같음)
시행일 : 2027년 5월 27일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② (생략) ③<u>수사기관</u>이 학대받은 <u>노인</u>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u>검사 또는 수사기관</u>--- <u>노인</u>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시행일 : 2026년 10월 2일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15조(보호조치) ① ~ ④ (생략)	제15조(보호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등으로 조사 또는 <u>수사</u> 를 받고 있는 자(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 ----- ----- <u>수사(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포함한다)</u> -----
⑥ ~ ⑪ (생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①·② (생략)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u>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③ <u>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u> -----.
시행일 : 2026년 10월 2일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① ~ ③ (생략) ④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라 한다) 또는 조사를 하는</u> -----.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u>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u> 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전담검사”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u><신설></u>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 <u>지방공소청장</u> ----- ----- ----- ----- ----- <u>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u> -----. ② <u>중대범죄수사청장은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수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u>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u> ----- <u>전담검사, 전담수사관</u> -----
② (생략) ③ <u>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u>	

현행	개정안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u>수사방법</u>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u>검찰총장</u> 및 경찰청장은 <u>전담검사</u>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u>제2항부터 제4항까지</u>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 <u>수사</u> <u>및 업무 처리 방법</u> ----- -----. ⑤ <u>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u> ---- ----- <u>전담검사, 전담</u> <u>수사관</u> -----. ⑥ ----- ---- <u>제3항부터 제5항까지</u>----- -----.
시행일 : 2026년 10월 2일	

2. 검토의견

□ 2026년 3월 24일 제정된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0월 2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기존의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도 개정되어(10월 2일 시행예정)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게 수사기관 및 공소기관 간의 권한 및 상호 관계 등 세부 절차적 사항이 정비되었음.

<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수사와 기소의 분리	보완수사권을 포함하여 검사가 보유하고 있던 수사권을 모두 폐지함.
보완수사 요구권	보완수사 요구 시 사법경찰관은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 이행 의무(1개월 연장 가능), 미이행 시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 외 상급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 가능
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송치 외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 요구 가능, 사건송치 요구 시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 또는 상급수사관서를 지정하여 보완수사 요구 가능 재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유지되더라도 다시 재수사 요구 가능, 적절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요구 가능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피의자신문 등 내용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대신 검사가 피의자, 사건관계인,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청취 및 의견서 등 자료제출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재판상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음)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고발인이라도 직접적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관련)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자는 이의신청 가능

자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개정 「형사소송법」의 변화와 필요 조치들’, 발췌·재정리

□ 개정안들은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기존 검찰청 검사의 수사에 대하여 적용되던 조항들이 수사·기소 분리 및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공소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들의 개정 사항 정리 >

현행	개정안	비고
수사기관이 ~ 조사하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¹⁾ 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따른 용어 정리
조사·검증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 검증	
수사·재판과정	수사, 공소 및 재판과정	
검찰총장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검찰청의 기능이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되는 것에 따른 명칭 병기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방공소청장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변경됨에 따른 명칭 변경
발달장애인 전담검사	발달장애인 전담검사 및 발달장애인 전담수사관	검사의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이관된 것에 따른 정리
수사 중	수사 중(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포함)	현행법상 ‘수사 중’인 사안의 범위에 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까지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

- 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및 형사사법절차에서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²⁾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과정에도 적용하려는 것임.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사고에서의 의료행위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주체 중 하나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을³⁾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려는 것임.

④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재판기관, 수용기관 등 공무소에 대하여 전산 조회 또는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된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4.]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장애인권의 옹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라 한다)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검증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제59조의8제1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 검증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검증 또는 증인 신문 전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재판과정의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법률 제2169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5. 27.] **제52조(의료사고심의절차 등)**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보건의료인이 입건된 경우 시·도경찰청장,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⁴⁾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과정에도 적용하려는 것임.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 또는 해당 사건의 환자등은 심의위원회에 해당 의료사고의 의료행위등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 또는 환자등이 심의를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였을 것

2. 해당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상태일 것

③ 심의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거나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3항에 따른 심의기간 중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거나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의료행위등의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감정서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절차 완료 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 여부 등의 결과를 성명 등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하여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거나 당사자에 대한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일부를 제한하여 공개하거나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심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5. 26.]

- 4) 「노인복지법」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 ③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의 경우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⁵⁾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과정에도 적용하고, 현재 검찰청의 발달장애인 조사 또는 심문을 위한 전담검사 규정을⁶⁾ 공소청의 전담검사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담수사관 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등의 아동보호조치 시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의 예외 사유 중 하나인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⁷⁾ 공소청

-
-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 ③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 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전담검사”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 7)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장애

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인력(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다.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계획
2.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
2. 아동학대사태관리대상자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자(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과정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⁸⁾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과정에도 적용하려는 것임.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에게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⑩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⑪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10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아동복지법」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①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은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 또는 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 다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9조의16제1항⁹⁾에서는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는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추가하면서도,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술조력인이 실제 참여하는 절차는 현행과 같이 “조사과정, 검증 또는 증인신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검사가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하는 경우에도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취지가 조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항에서 규정된 진술조력인 참여 대상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과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5개 법률안의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총 69개 법률에서 개정된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724호)이 2026.8.24. 발의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칙 개정 없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 2026.8.4. 공포, 2026.10.2. 시행)의 부칙 개정(타법개정 부칙 조항 신설)을 통해 다른 법률의 송치단계 사건 처리 관련 규정, 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 등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라 한다)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 검증 또는 증인신문을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제59조의8제1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 검증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 ☐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5개 법안의 취지에 동의함.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9조의16제1항은 진술조력인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문 의 처
02)6788-5494